

29.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- 상정일자 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20년 11월 23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태환)

□ 제안이유

- 2021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교육부에서 202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2,843명으로 통보해 음에 따라,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“2,792명”에서 “2,843명”으로 51명 증원하여 국가 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(안 제2조)
- 이에, 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

계를 “2,792명”에서 “2,843명”으로 51명 증원함(안 제4조 관련 별표3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2021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▶ 안 제2조에서,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“2,792명”에서 “2,843명”으로 51명 증원하고,
 - ▶ 안 별표3에서,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“2,510명”에서 “2,548명”으로 38명 증원하며, 특정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 정원을 “212명”에서 “225명”으로 13명 증원함

【정원 조정 내역】

구 분	변경 전 (A)	변경 후 (B)	증감 (C=B-A)	비고
일반직(5급 이하)	2,510명	2,548명	38명	안 별표3
특정직(5급 상당 이하)	212명	225명	13명	안 별표3

○ 검토 결과

- ▶ 본 개정 조례안은,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1)에 따라 통보된 2021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이견이 없음
- ▶ 다만, 유치원의 교무, 행정 업무를 전자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‘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’ 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‘미래형 원격수업 지원 사업’,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교육 구현을 위한 ‘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’ 등 여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이 증원된 만큼 향후, 인력 및 예산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 이유와 예산 확보계획은?	○ 정부의 일자리 확보 정책과 신규 정책사업 발생에 따라 소요인력이 필요. 특히, 2021년 신설학교가 많은 관계로 인력이 대거 증원됨 ○ 예산은 교육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함

1)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(총액인건비제 운영)

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